

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원 사업 공고

식품위생법 제89조(식품진흥기금)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3일
전북특별자치도지사

1. 사업목적

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

2. 용자에산액 : 500백만원(자금 소진시까지)

3. 용자대상자

-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
 - 단란주점·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
- 모범·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

※ 용자 대상 우선순위
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, 식품 제조·가공업소
- 모범음식점·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
-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

4. 제외대상

- 영업허가(신고)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
- 휴·폐업 중인 업소
- 용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·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
- 용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
- 업종별 용자한도액을 용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
- 그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업소

5. 용자 한도 및 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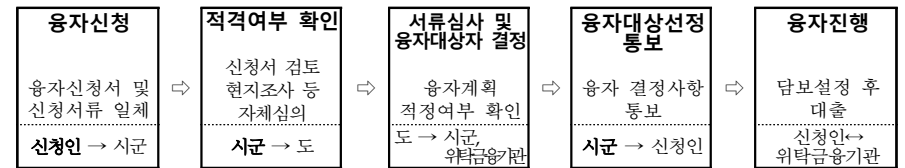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용자대상 업소	용자한도	용자조건	
			이율	상환기간
영업장 시설개선자금	식품제조·가공업	100	연 1% (위탁수수료)	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
	식품접객업 (단란, 유흥주점 제외)	50		
	위탁운영집단급식소			
HACCP 시설자금	식품제조·가공업	100		
육성자금	모범음식점	50		
	향토음식점			
화장실 시설개선자금	식품제조·가공업	20		
	식품접객업			
	위탁운영집단급식소			

- * (시설개선자금)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, 개·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을 설치,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
- * (육성자금)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

6. 용자절차

- 용자신청 :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 위생부서
 - 구비서류 : 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서
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(공사견적서 포함), 용자신청 이행확약서
영업신고증(허가증)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모범·향토음식점 지정증(육성자금에 한함),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
- 용자절차



- ※ 용자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
- 위탁금융기관 : 전북은행
- 용자사업 완료
 -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시·군 위생부서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및 관계서류 제출
 - 관계서류 : 시설개선 완료신고서, 시설개선 완료사진(시설개선 공정별 전·후), 용자금 지출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지출 영수증 등)

7. 용자금 기한 전 상환조치 대상

- 용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시설개선 미완료 또는 목적외 사용한 경우
-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
- 채무 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의 변동
- 육성자금 수령 후 모범·향토음식점 지정 취소된 경우
- 기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사항

10. 문의처

전주시(063-281-2372)	진안군(063-430-2312)
군산시(063-281-2372)	무주군(063-320-2328)
익산시(063-859-5453)	장수군(063-350-2541)
정읍시(063-539-6902)	임실군(063-640-3164)
남원시(063-620-7991)	순창군(063-650-1745)
김제시(063-540-1382)	고창군(063-560-2887)
완주시(063-290-2706)	부안군(063-580-4997)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0.2.28., 2024.1.12.>

식품진흥기금용자신청서 (제5조제1항제1호 관련)				
신청인	① 대표자 성명		② 생년월일	
	③ 업소명		④ 전화번호	
	⑤ 주소(소재지)		⑥ 사업자등록번호	
사업체규모	⑦ 영업장총면적	㎡	⑧ 자산총액	천원
대상업종	⑨ 업종	<input type="checkbox"/> 식품제조·가공업 <input type="checkbox"/> 휴게음식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과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음식점 <input type="checkbox"/> 모범음식점 <input type="checkbox"/> 향토전통음식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급식영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단란주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흥주점		
자금용자 신청내역	⑩ 실소요금액		⑪ 용자신청금액	
<p>위와 같이 「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.</p>				
시군확인	20 년 월 일			지정은행확인
확인자	신청인 (인)			은행명
직 성명				대출 <input type="checkbox"/> 가 능 <input type="checkbox"/> 불 가능
(인)				확인자 (인)
시장군수 귀하				
<p><구비서류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. 용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. 영업허가증 사본 4. 사업자등록증 사본 5.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				

시설개선 완료신고서(제7조제5항 관련)					
신고번호		업 소 명		대 표 자	
				신 청 자	
소 재 지				전화번호	
용자금액	원	신 청 일 (시·군·청)	20 . . .	대 출 일 (수탁금융기관)	20 . . .
용자및상환조건	2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(연 %)				
용자금의 용도	영업장시설개선(), 확장설시설개선(), 육성자금()				
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					
공사기간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까지 (개월)				
개·보수 내용	※ 개략 기재				
착 공 일	20 년 월 일				
완 공 일	20 년 월 일				
시공 업체명					
<p>상기와 같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대표자 (인)</p> <p>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·군수 귀하</p>					
첨부서류	1. 시설개선 완료사진 : 시설개선 공정별 전·후 사진 2. 용자금 지출 증빙서류 : 각 1부 - 세금계산서, 지출영수증 등 지출 확인 가능 내역 등				